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박 정·정성호·어기구

김병기 · 김병주 · 임오경

안규백 · 김정호 · 윤후덕

허 영·김남근·박홍근

김영환 • 민병덕 • 강유정

소병훈 · 송기헌 · 유호중

의원(18인)

제안이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지역공동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내 자립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19,261명의 고용, 1,64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10여개소의 마을기업은 연

매출 2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 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 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 또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업을 말함(안 제2조제2호).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 여야 함(안 제4조제2항).
-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하여 마을기업 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제1항).
- 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 2.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문 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유형·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 3.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되는 자로서 마을기업이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

- 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육성사업과 지원시책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① 마을주민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추진체계

제6조(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마을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 1. 마을기업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 4. 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도별 지원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도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시 · 도별 마을기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시 · 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 3.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 4. 시 · 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5. 시 · 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 다.
- ④ 그 밖에 시·도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추진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마을기업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마을기업 육성 ·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관리
- 3.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마을기업 포상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3. 마을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마을기업의 지정심사를 위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0조(시·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원 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 등을 위하여 시·도에 시·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육성

-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1. 마을주민이 대표자 및 구성원일 것
 - 2. 마을주민이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 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 4. 대표자 및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 5. 지역의 소득・일자리창출 기여, 지역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마을기업과 사업계획 및 경영에 관한 마을기업지 원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마을기업의 신청·심사·지정·약정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기준·내용 및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 3. 시설비 등의 지원ㆍ융자
 - 4. 부지구입 융자
 - 5.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 6. 마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 7.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1항 각 호의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 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약정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지정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 제15조(마을기업의 사업) 마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 업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민 공동체 기반의 사업
 - 3. 마을기업이 수행하도록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 4. 그 밖에 마을기업의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
-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①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시·도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관할 지역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시·도 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 1. 지역자원의 조사 및 사업의 발굴
 - 2.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협력 사업 수행
 - 3. 마을기업과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기관, 법인, 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4. 마을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5. 마을기업에 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 6. 마을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 7. 그 밖에 마을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서 시·군·구 마을기업지원기관 (이하 "시·군·구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 제17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사업수행을 감독하고, 위법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시정·개선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마을기업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마을기업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 제1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마을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 사가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지 원기관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